2016년 교육분야 정상화 과제 홍보 자료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교육부 핵심과제(4건')

* '15년 기존과제 3건 + '16년 신규과제 1건

2015년 과제	2016년 과제*
① 공직자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16.5.종료)	① (신규)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②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15.8.종료)	
③ 선행교육 근절	② (기존) 선행교육 근절
4 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 윤리 강화	③ (기존) 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윤리 강화
5 대학등록금카드 납부제 활성화	④ (기존) 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 활성화

^{* &}quot;2016년「비정상의 정상화」100대 정부핵심과제("16.3.31)" 중 교육분야 핵심과제로 상기 4건이 선정됨

1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지금까지는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제출 대상기관'에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공익법인만 포함되어 있었음
- 2016년 8월부터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을 대상 기관에 추가하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중복지원을 예방하도록 함
- ※ 단,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제외

- 또한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을 하는 법인에 대해 학자금 지원현황 관련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아울러, 학자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수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단,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제외

기존관행	정상화 계획
 중복지원 의무참여기관이 정부, 지자체, 공익법인, 공공기관으로만 한정되어 참여대상기관의한계가 존재 대학 등에서 학자금 지원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이를 제재할 근거 미비 중복지원 금액에 대한 환수규정 미비 	 중복지원 참여 대상기관 확대(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 추가) 학자금 지원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학자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초과 금액 환수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을 하는 법인에 대해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협조 요청을 하고 요청받은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그간 노력]

- ►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연 비영리 공익법인의 학자금 지원 현황 파악 완료('15년말) 및 **중복지원 해소 독려**(계속)
- ► 각 참여기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도 안내 브로슈어 및 FAQ 책자 제작·배포(15.6월 완료)
- ▶ 기재부, 「'16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반영(1.19.), 미참여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점검 및 설명회 실시(계속)
- ► 중복지원 방지제도 홍보를 통해 '14년 대비 '15년 중복지원자 17,106명 감소, 94억원을 회수하여 채무부담 경감

구 분	'14.12월 (a)	'15.12월 (b)	차 이 (a-b)
중복 지원자(명)	50,644	33,538	17,106
중복 지원액(백만원)	42,710	33,287	9,423

► 중복지원 참여기관이 '14년 359개에서 **'15년 442개 기관으로 23% 증가**《 중복지원 방지사업 참여기관 현황 ≫

(15.12.31.	혀재	다위:	기(1)

구분	대상기관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5년 신규
정부부처	7	5	5	6	6	7	1
지방자치단체	198	73	87	100	126	140	34
공공기관	119	5	27	38	38	97	56
(민간)공익법인	1,335	-	35	163	189	198	76
계	1,659	83	154	307	359	442	167

- ※ 비영리공익법인 1.335개는 전체 국내 대학생 학자금 지원기관 수치임
- ※ '15년 참여기관(442개)에 신규 참여기관(167개) 포함
- ► **중복지원 방지 의무화를 위한 근거법률**(「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학재단법)」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약칭: 학자금 상환법_) **개정 완료**('16.5.29. 공포/ '16.8.30. 시행 예정)

[금년도 추진 계획]

- ▶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학자금 지원정보 직접 연계 확대(~'16.8월말)
- ▶ 근거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16.9월중)
 - * 법률 개정:「장학재단법('16.5.29.)」,「학자금상환법('16.5.29.)」
 - ** 시행령(장학재단법 시행령,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22~7.12)
- ► 중복지원 최소화를 위한 정기적 업무협의, 중복지원 사례가 많은 대학을 방문하여 업무교육 진행, 기타 미참여기관에 대한 점검 및 설명회 실시(계속)

선행교육 근절 (교육부)

- o (초·중·고) 교육과정 운영·점검 활동을 강화하여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행위 규제를 통한 선행교육 관행 개선
- o (대학) 논술시험 등 대학입학전형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안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기존관행	정상화 계획
 학교현장에서 학원 등에서 미리 배워온 것을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과 시험 출제로 공교육
전제하고 수업 진행 변별력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정상화 고입과 논술 등 대학별고사에서 중학교, 고교
벗어난 시험 출제 고압대학별고사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출제로	교육과정 범위내 출제로 사교육 유발 요인
사교육 유발	차단

[그간 노력]

- ▶ 학교 내 선행교육 관행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 ※ 공교육정상화법 및 시행령 제정,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 설치 등
- ► 교육과정 운영·점검 활동을 강화하여 학교내 선행학습 유발행위 규제를 통한 선행교육 관행 개선
- ► 논술시험 등 대학입학전형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안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금년도 추진 계획]

- ▶ 법 시행 이후 나타난 미비점 보완 「공교육정상화법」개정
- ▶ '16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출제문항 점검 및 시정조치
- ▶ '16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및 후속조치

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윤리 강화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연구윤리 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한 연구자·학문후속세대의 인식강화,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연구비 부정사용 근절

기존관행	정상화 계획
•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으로 연구결과물에 대한 국민 신뢰저하 및 연구자· 학계 불신으로 연결되어 사회적 비용 야기	

[그간 노력]

- ► (교육) 대학(원)생 오프라인 교육, 학술연구지원사업 공동연구원 까지 사이버교육 의무 이수 확대('16.1분기)
- ▶ (정보 제공) 연구윤리포럼 개최('15.9./11.), 연구윤리정보센터 운영*
 - * 교육콘텐츠 제공: 1,746건('13년) → 2,611건('14년) → 3,380건('15년) 자문 및 상담: 130건('13년) → 371건('14년) → 390건('15년)
- ► (연구비 부정사용 근절)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 * 연구비 관련 비위 시, 징계(최대 파면) 근거 마련('15.4.)
 - ** 연구부정 행위 용어·기준 명확화, '부당한 중복게재' 추가('15.11.)

[금년도 추진 계획]

- ▶ (교육) 학문후속세대 대학 자체 교육 강화 권고('16.1~3분기),
 '연구윤리 활동 실태조사'를 통한 교육 현황 점검('16.2~3분기)
- ► (정보 제공) 연구윤리포럼 개최 예정('16.6./10.), 정보센터 운영
- ► (연구비 부정사용 근절) 연구비 부정사용액의 최대 300%까지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16.3분기), 입법예고('16.4.~'16.5.)

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 활성화 (교육부)

등록금 카드납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가계의 목돈 마련 부담 완화 및 납부 편의성 제고

기존관행	정상화 계획
■ 대학이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학생 및	■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대학이
학부모가 대학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1%미만으로
것을 기피	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

[그간 노력]

- ►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여 납부 편의 및 부담 완화 방안 모색
 - *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교육협의회, 관계 전문가 등
- ▶ '15학년도 대학별 등록금 카드납부제 시행현황 공표

[금년도 추진 계획]

- ▶ 대학등록금 카드납부 활성화 기반 마련
- ►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 추진단」을 활성화하여 납부편의 및 부담완화 방안 발굴 및 확산
- ▶ '16학년도 대학별 등록금 카드납부제 시행현황 공표